

교내 장학금

(2020.10.13. 기준)

가. 입학생 장학금

구 분	선정기준 (백분위)	등록금 장학혜택	자격조건
수시, 정시 1등 ~ 2등	입학사정원칙	1학기 수업료 면제(입학금 제외)	수시, 정시전형 모집단위별 우수자
수시, 정시 3등 ~ 5등		1학기 수업료의 50%(입학금 제외)	
입학성적우수자 생활관 장학금		생활관비 전액 면제	① 입학사정원칙 ② 입학 이후 직전학기 취득성적 4.0 이상, 이수학점 18학점 이상이어야 한다.

나. 재학생 장학금

장 학 종 류	선정방법 (인원)	지 급 관	대상자	지급액
공로장학금	총학생회	임기기간 (해당학기)	총학생회 회장	수업료의 100%
			총학생회 부회장	수업료의 70%
			총학생회 부서장	수업료의 30%
	대의원회	임기기간 (해당학기)	대의원회 의장	600,000원
			대의원회 부의장	480,000원
			대의원회 임원	300,000원

근로장학금	국가근로		해당학기	대상자 전원	장학재단규정 지급기준
보훈장학금	자녀	국가유공자 직계자녀	해당학기	대상자 전원	등록금 전액 (국고 50% : 학교 50%)
	본인	본인이 국가 유공자			학교 100%
가족장학금	재학생중 가족의 경우		해당학기	대상자 중 1인	수업료의 35%
교직원장학금	재직교직원의 직계가족		전학기	대상자 전원	수업료 전액 (입학금 제외)
기타장학금	새터민장학금		해당학기	대상자 전원	등록금 전액 (국고50% : 학교50%)
	장애학생장학금		해당학기	대상자 전원	장애등급 및 소득분위에 따라 총장이 별도로 정함
	다자녀 장학금 (재학 중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)		해당학기	대상자 전원	국가장학금 소득분위에 따라 별도로 정함
	소년소녀가장 (아동복지시설 퇴소자 포함)		해당학기	대상자 전원	1,000,000원

<p>학업장려장학금</p>	<p>재학 중 회계사, 세무사, 감정평가사, 관세사 1차 시험 합격자 및 공무원 최종합격자 (제적, 재입학, 신입생 제외)</p>	<p>해당학기</p>	<p>대상자 전원 (17학번부터 적용)</p>	<p>1차 시험합격자 : 반액 최종합격자 : 전액 공무원 최종합격자 : 반액</p>
<p>복지장학금</p>	<p>국가장학금 소득분위에 따라 총장이 별도로 정함</p>			